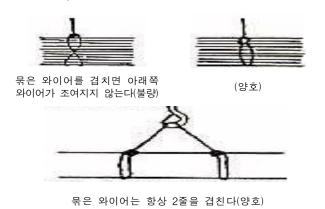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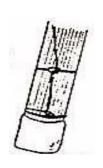
- (2) 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운반작업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방법에 의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.
  - (나) 달아 올릴때에는 다음 〈그림 2〉와 같은 요령으로 올리고 장비 및 로프의 허용하 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 올리지 않아야 하며 로프 사용시 다음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.
    - ① 와이어로프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5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- ②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작업 용구를 제작할 경우 가스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한다.
    - ③ 섬유벨트슬링 사용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7이상이 되도록 하고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, 심하게 손상, 부식된 것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    - ④ 섬유벨트슬링을 구입하여 사용시 벨트슬링의 사양, 사용 환경, 사용방법 및 주의 사항, 폐기기준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



부득이 세로달기를 할 경우, 반드시 포대나 상자를 붙여서 철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(양호)

## 〈그림 2〉묶은 와이어의 달아올리기 사례

- (다) 비계나 거푸집위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 놓거나 얹어 놓지 않도록 하고, 특히 철 골구조인 경우 반드시 철골보에 걸쳐서 적재하여야 하며 데크플레이트(Deck plate) 위에 과다하게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달아 올리는 작업장 부근에는 관계근로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마) 인양장비의 운전자는 유자격자로서 현장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.